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규칙

제정 2020.06.16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주)대흥기획(이하 '당사'라 한다.)과 중소기업간(이하 '파트너사')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체결에 있어 파트너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거래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체결방식 및 계약방식 선택기준)

당사는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고려하고 당사가 제정한 아래 본 규칙 제4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중 선택해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2. 제한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3. 지명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4. 일반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제3조 (계약 체결 준수사항)

당사의 업무 담당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 준수 사항

- 가. 서면의 사전 발급
-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다. 명확한 납기
- 라. 객관적 검사기준
-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바. 법률 혹은 계약에 근거한 계약 해지

2. 금지 사항

-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마. 용역내용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사.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아.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자. 부당특약 행위

제4조 (계약 체결 방식 선택 기준)

1. 수의계약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담당자는 당사 전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파트너사와 사전계약 예정일부터 광고주 오리엔테이션일(제안일)까지의 기간이 7일(실제 근무 일자 기준) 이내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나. 현재의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1) 광고주 요청으로 진행되는 경우

(2) 광고주 경쟁PT(연간대행) 시 컨소시엄 구성으로 성공하거나 업체의 기여도가 높은 경우

- (3)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정비하거나 해당업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품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 사실상 경쟁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1) 파트너POOL의 등록파트너사로서 등록파트너사들 중에 계약 대상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M1]

※ 등록파트너사 : 매년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서 접수 후 당사 '파트너사 선정 및 운용 프로세스'를 통해서 각 부문별로 선정된 업체임

- (2) 특허 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 (3)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활용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4) 특정 기술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라. 프로젝트 유형별 단일 파트너사 하도급 발주 예상 총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 (1) 총 계약금액 1억원 미만 BTL : 스페이스, 이벤트/프로모션, 디자인마케팅, 스포츠마케팅
- (2) 총 계약금액 10억원 미만 ATL, Digital 및 (1)항에서 열거하지 않은 BTL

2. 경쟁계약(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담당자는 당사 전결 규정에 따라 경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 프로젝트 규모가 커서 수의계약보다 경쟁계약이 가격 결정에 유리한 경우

나. 광고주 요청 등에 따라 경쟁입찰/PT를 통해 파트너사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

다. 당사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에서 경쟁계약을 결정한 경우

3. 일반경쟁계약

특별한 기준 없이 해당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입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보고후 입찰 진행여부 결정

제5조 (계약 체결 준수 사항)

1. 서면의 사전 발급

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적어도 파트너사가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 혹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황2]

나.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는 이 경우 합의된 사항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 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라.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연간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발주계약서를 고부할 수 있다. 발주계약서에는 용역의 대상, 거래 기간,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황3][j4]

마.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경(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 등)으로 인해 업무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완료 후 즉시 변경계약서를 교부한다.[황5]

바.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계약의 목적물의 완성 등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j6] 주요 변경되는 사항, 그에 따른 대금 추가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서면으로 합의 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가. 하도급 용역의 단가는 당사의 '표준단가체계'를 기본으로 한다[황7].

나. 당사의 '표준단가체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단가의 경우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파트너사와[j8]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라.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이를 소급하여 정산한다

마.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 임률(시간당/공수당 지급되는 노무비 금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파트너사 규모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바.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사.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계약서 또는 합의서 등에 명시한다.

3. 명확한 납기

당사는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납기를 파트너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계약 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파트너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파트너사의 책임이 없는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파트너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파트너사에게 배상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가.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파트너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트너사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파트너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당사는 검사 전 또는 검사 기간 중의 납품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가. 파트너사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이 완료된 날, 납품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무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나. 파트너사에게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파트너사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 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마.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

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으로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사.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한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아.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자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자.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차.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6. 계약 해지

가. 다음의 경우는 최고(催告) 없이 파트너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황9][j10]

(1) 파트너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파트너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황11][j12]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는 30일의 최고 기간이 필요하며, 최고를 받은 파트너사가 해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1) 파트너사가 하도급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파트너사의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 이행을 지연하여 파트너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 이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기

한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파트너사의 기술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파트너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외주비를 과다 청구한 경우(과실에 의한 경우 2회 이상)

제6조 (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가. 위탁시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정 기일 등을 명시하여 발급하고,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항13].

나.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파트너사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일시 등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否認)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 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否認)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 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바. 전시, 공사 용역 수행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정산 시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합의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사.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아.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자.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나.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파트너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파트너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라.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마.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사.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아.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파트너사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자.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위탁을 한 후, 파트너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카.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타.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용역을 수행해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파.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업무의뢰 행위

- 가. 구두에 의한 업무의뢰 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 나. 제작/행사 등을 위한 사전작업(시안 및 현장실사 등) 구두의뢰 후 파트너의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목적물에 대한 실비를 보존해주지 않는 행위[황14][15]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가. 파트너사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 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라. 파트너사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파트너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마. 파트너사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바. 경품부 판매, 할인 특매 등의 특별 판매 행사에 파트너사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나. 발주자로부터 용역 내용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다. 발주자로부터 용역 내용 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용역 내용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파트너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가.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협의를 신청한 후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파트너사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경쟁PT 등 파트너사의 공헌도가 높은 제작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파트너사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8.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파트너사에 귀책 사유가 없이 발생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파트너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당사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 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황18](19)단, 파관할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 용역 수행 과정(촬영 및 이벤트 진행 등)에서 발생민원에 대하여는 파트너사가 책임을 부담함)

9. 부당특약 행위

가. 파트너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나.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다. 당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제7조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당사 및 당사의 거래당사자인 파트너사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한다.

2. 단가 인하 시 충분한 사전 합의 및 서면 발급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 등에 따른 단가 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 한다.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해야 한다.

제8조 (계약이행 시 금지 사항)

당사 및 당사의 거래당사자인 파트너사의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가. 위탁 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 당사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재료, 데이터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기한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라.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마.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바. 파트너사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사. 파트너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아.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률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다.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라.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마.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바. 파트너사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사. 파트너사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가.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 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파트너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후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황20] [j21]

차.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카.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용역이행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타.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파. 위탁 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 환차손 등을 파트너사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가.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다. 기타 파트너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 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보복 조치 행위

파트너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다.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파트너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자재를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파트너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10.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 행위

가. 파트너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나. 파트너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트너사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3)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나. 파트너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제9조 (Hot Line 및 파트너사 지원조직 운영)

1. Hot Line 운영

당사와 거래 시 하도급 대금 관련 애로사항 및 불공정 행위 등 파트너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Hot Line을 운영한다.

2. Hot Line의 위치

Hot Line은 당사 상생협력파트너포털(partner.daehong.co.kr) 내에 상시 운영한다.

3. 파트너사 지원조직 운영

당사는 파트너사에 대한, 동반성장펀드, 교육 및 신규사업안 등을 담당하는 전담 파트너사 지원조직(상생협력셀)을 운영한다.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